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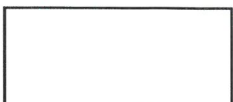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서

전자민원신청번호		202017210000014341	접수일자	2020-01-13
대상 기기	상호 또는 성명	콘손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성남지점	적합성평가 분야	적합등록
	기자재 명칭	정온식스포츠형감지기	기본모델명	103DHL
	적합성평가 번호	R-REM-DBE-103DHL	적합성평가 연 월 일	2020-01-13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모델명		103CHL,103CHH		103CHL,CHD-FW,103CHH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사항의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Year) 01월(Month) 13일(Date)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Registration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상호 또는 성명 <i>Trade Name or Registrant</i>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성남지점
기자재명칭(제품명칭) <i>Equipment Name</i>	정온식스포츠형감지기
기본모델명 <i>Basic Model Number</i>	103DHL
파생모델명 <i>Series Model Number</i>	103CHL, CHD-FW, 103CHH
등록번호 <i>Registration No.</i>	R-REM-DBE-103DHL
제조사/제조(조립)국가 <i>Manufacturer/Country of Origin</i>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주) 성남지점 / 한국
등록연월일 <i>Date of Registration</i>	2018-05-10
기타 <i>Others</i>	

위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verified that foregoing equipment has been registered under the Clause 3, Article 58-2 of Radio Waves Act.

2020년(Year) 01월(Month) 13일(Day)

국립전파연구원장



Director General of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적합등록 방송통신기자재는 반드시 "적합성평가표시" 를 부착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